

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0 월 1 일

여 수 시 장 권 오봉



여수시 조례 제1665호

붙임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665호

##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”를 “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경비원 등의 인권을”을 “근로자의 인권을”로, “경비원 등의 인권침해”를 “근로자의 인권침해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경비원 등”이란”을 ““근로자”란”으로, “업무에”를 “업무 및 관리업무 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동주택 입주자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”로, “위탁관리업체 및 경비·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”을 “관리주체로서 근로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경비원 등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경비원 등”을 “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비원 등의”를 “근로자의”로, “경비원 등에게”를 “근로자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비원 등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경비원 등의 권리)”를 “(근로자의 권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경비원 등은”을 “근로자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경비원 등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비원 등의”를 “근로자의”로, “경비원 등 또는”을 “근로자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경비원 등”을 “근로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경비원 등이”를 “근로자가”로, “연계 사업”을 “연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경비원 등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경비원 등”을 각각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경비원 등을”을 “근로자를”로, “경비원 등의”를 “근로자의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경비원 등”을 “근로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</u>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<u>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</u>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“<u>경비원 등</u>”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, 청소 <u>업무에</u>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<u>입주자 등</u>”이란 <u>공동주택 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(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</u> 말한다. 이하 같다), <u>위탁관리업체 및 경비·청소용역업체로서</u> <u>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</u> 영향을</li> </ol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br/> <u>근로자의 인권을</u> -----<br/>         -----<br/>         ----- <u>근로자의 인권침해</u> -----<br/>         -----<br/>         -----<br/>        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        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“<u>근로자</u>”란 -----<br/>         -----<br/>         -- <u>업무 및 관리업무 등에</u> --<br/>         -----.</li> <li>3. ----- 「<u>공동주택관리법</u>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<u>입주자 및 사용자</u>-----<br/>         --- <u>관리주체로서 근로자</u>---</li> </ol> |

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기본시설”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·화장실·샤워시설 및 냉·난방설비를 말한다.

5. (생략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경비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원 등의 권리) 경비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

-----.

4. ----- 근로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 
----- 근로자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근로자의 -----  
----- 근로자에게 -----  
-----.

③ ----- 근로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근로자의 권리) 근로자는 -  
-----  
-----  
-----

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  
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 
가진다.

제5조(입주자 등의 책무) 입주자  
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 
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 
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 
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 
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 
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의 범위) 시장은 경비  
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  
해 경비원 등 또는 공동주택에  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  
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에 대  
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  
업
2.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
3.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실태파악 등) ① 시장은 경
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입주자 등의 책무) -----  
-----  
-----  
근로자 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지원의 범위) ----- 근로  
자의 -----  
-- 근로자 또는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근로자-----  
-----  
--
2. 근로자가 -----  
-----  
-----  
연계
3. ----- 근로자-----  
-----  
-----

제7조(실태파악 등) ① ----- 근로

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, 기본 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 및 인 권보장을 위한 실태과약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과약 결 과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에 미 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8조(직무와 인권보호 교육) ① 시장은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 로 경비원 등의 차별금지, 기본 시설의 설치·이용 및 인권보장 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(포상)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 근로자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직무와 인권보호 교육) ① -----  
---- 근로자들 -----  
-----  
-- 근로자의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포상) ---- 근로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